

#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2. 08. 16. 송선영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 08.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8. 29.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송선영 의원)

###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이용 수수료를 현시점에 맞게 개편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이용 수수료를 조정함(안 별표1).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이용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과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이용료가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이용료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 및 혼선이 예상되는 바, 이용료 변경 전 시설을 운영하는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08. 1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08.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8. 29.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보건정책과장 광매현)

### 가. 제안이유

#### ○ 추진필요성

- 화성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설치된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자살예방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2023.1.1.부터 5년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 ○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단체·시설의 보호·육성등)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등)
-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등)
-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 나.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내용

- 시민정신건강사업: 생애주기별 정신질환예방, 정신건강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재난심리지원
- 정신보건 환경조성: 정신건강캠페인, 정신건강 기획강좌 제공,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
- 자살예방사업: 자살시도자 및 자살고위험군, 자살유가족 자살예방상담 및 지원사업, 청년정서지원사업
- 위기대응사업: 위기대응 핫라인 운영, 야간 사례관리,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등
- 사례지원: 장기입원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질환자 수 파악 및 관리, 청년정신건강 지원사업,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지원, 정신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사업
- 주거지원: 자립체험주택, 중증정신질환자 위기쉼터, 확대형 가사지원 서비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사업등
- 재활지원: 클럽하우스 운영, 취업지원서비스, 주간재활 및 자조모임 운영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보건사업

### 나. 위탁사무 내용

- 위탁시설명: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
- 위치 및 규모

센터명		위치	면적(m <sup>2</sup> )
정신건강복지센터	본소	향남읍 향남로 470, 1층(화성종합경기타운)	165.3
	동탄분소	노작로 226-9, 2층(석우동, 동탄보건소)	52
	봉담분소	봉담읍 진동1길 47-2, 덕수빌딩 2층	251.1
	향남클럽하우스	향남읍 발안만세길 10, 제일프라자 2-3층	479.3
	마도분소	마도면 마도북로 389(마도보건지소)	202.5
자살예방센터	T.T zone	동탄대로 8길 36, 동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 A동 1층	234

○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계	보조금 재원		
		국비	도비	시비
2023	4,036(100%)	1,220(30%)	603(15%)	2,212(55%)

다. 위탁 계획

- 위탁기간: 5년(2023. 01. 01. ~ 2027. 12. 31.)
- 위탁자의 자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수탁자와는 위탁내용 및 의무, 예산지원액 등에 관하여 협약서 작성, 교환
  - ※ 위·수탁 조건 위반 및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위탁취소 가능

라. 기타사항

- 위탁운영 원칙
  - 토지 및 건물사용: 무상사용
  - 지원예산: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위탁시설 인력
  - 인력구성 : 61명 (센터장 1인, 사업수행인력 60인)

마. 향후 추진계획

- 2022. 09.: 민간위탁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2. 10.: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2. 11.: 수탁기관 협약 체결 및 인계·인수
- 2023. 01.: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동의안은 화성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설치된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자살예방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2023.1.1.부터 5년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센터 운영을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굴 및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종결 이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탁기관 선정 이후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08. 1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08.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8. 29.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보건정책과장 광매헌)

### 가. 제안이유

#### ○ 추진필요성

- 화성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화성시중독통합지원센터 위·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2023. 1. 1.부터5년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맞춤형 중독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 ○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위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단체·시설의 보호·육성등)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례 조례 제4조
-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나.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내용

- 중독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자문
- 지역 내 중독관련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사업 계획 수립
-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 중독자 및 가족 교육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지역주민 대상 중독관련 상담·교육 등)

-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 지역 특성에 따른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나. 위탁 시설 현황**

- 시설명: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구분	본 소(정남)	분 소(동탄)
위치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998 (정남보건지소 1층)	화성시 반송동 노작로 226-9 (동탄보건지소 2층)
규모	92.5㎡(28평)	39.6㎡(12평)
인력	6명 (센터장1, 팀장1, 팀원4)	4명 (팀장1, 팀원3)
예산(안)	688,925천원 (국비 137,538천원 / 도비 12,591천원 / 시비 538,796천원)	

**다. 위탁 계획**

- 위탁기간: 2023. 01. 01. ~ 2027. 12. 31. (5년)
- 위탁자의 자격: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건강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수탁자와는 위탁내용 및 의무, 예산지원액 등에 관하여 협약서 작성, 교환
- ※ 위·수탁 조건 위반 및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위탁취소 가능

**라. 기타사항**

- 위탁운영 원칙
  - 토지 및 건물사용: 무상사용
  - 지원예산: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위탁시설 인력 구성
  - 인력구성: 10명 (본소-센터장1, 팀장1, 팀원4 / 분소-팀장1, 팀원3)



**마. 향후 추진계획**

- 2022. 09.: 민간위탁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계획수립
- 2022. 10.: 수탁기관 모집공모 및 신청서 접수
- 2022. 11.: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22. 12.: 수탁기관 협약체결 및 공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동의안은 화성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화성시중독통합지원센터 위·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2023. 1. 1.부터5년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맞춤형 중독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위탁사무는 중독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과 자문, 지역 내 중독관련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등임.
-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화성시중독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향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독관리 통합지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책임성을 가진 수탁기관 선정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08. 1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08.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8. 29.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건강증진과장 오재향)

### 가. 제안이유

####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및 제30조(권한의 위임)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11조(위탁기간)
-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의 위탁)

#### ○ 추진필요성

- 본 사업은 2006년부터 민간 위탁하여 추진해 온 사업으로 보건·인지재활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노인보건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2.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전문성과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노인보건사업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이나 병원 이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내용

- 화성시 노인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 일상생활기능 훈련 등 인지재활 서비스
- 의료재활 관련 서비스
- 기초 건강관리 서비스 및 송영서비스
-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서비스
- 대상자 노인과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 노인보건, 복지 연구조사 및 연계사업
-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업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보건사업

**나.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 위치 및 규모

구 분	인력	위 치	설 치	(현) 수탁기관
남양노인보건센터	4명	남양보건지소 내 1층 76.5㎡(23.15평)	2006년 5월	동남보건대학교
장안노인보건센터	4명	장안보건지소 내 1층 159㎡(28.1평)	2007년 11월	
마도노인보건센터	5명	마도보건지소 내 1층 188㎡(57평)	2009년 7월	
매송노인보건센터	4명	매송보건지소 내 1층 130㎡(40평)	2008년 6월	수원대학교
기배노인보건센터	5명	기배건강생활지원센터 내 1층 295.92㎡(89평)	2007년 10월	
봉담노인보건센터	4명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내 1층 137.04㎡(41평)	2010년 1월	가톨릭 성빈센트 병원

**다. 위탁계획**

- 위탁기간: 2023. 01. 01. ~ 2024. 12. 31.(2년)
- 위탁신청 자격: 노인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이나 병원 이상의 비영리법인을 공개 모집 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11조(위탁기간) 제9조(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평가
    -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계획의 전문성, 지역사회 협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시비 100%)	2023년 위탁 소요예산(안)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계	1,378,858	1,378,858

※ 2023년 본예산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예산(안)

- 소요예산: 1,378,858천원[붙임3 산출내역 참조]
- 인건비: 1,168,100천원(급여, 제수당, 사회보험 부담금, 퇴직금 등)
- 사업비: 210,758천원(사업 및 운영비)

○ 추진일정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심의 2022년 8월
-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접수 2022년 9월
-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2022년 11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2022년 12월
-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 2023년 1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동의안은 2006년부터 민간 위탁하여 추진해 온 사업으로 보건·인지재활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노인보건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2.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노인보건사업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이나 병원 이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효과적으로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병의 사전 예방·조기발견 및 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병원 등 전문기관에 화성시노인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노인보건센터의 예산 중 인건비가 84.7%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의료서비스의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인력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2. 08. 16. 이용운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 08.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9. 01.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이용운 의원)

### 가. 제안이유

-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나. 주요내용

-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의(안 제3조, 제4조)
-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안 제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조례안은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보청기, 보행기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정의, 지급대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임.
- 검토결과,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복지 사각 지대에 있던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중복수혜 여부 및 지원된 보청기, 보행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08. 1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08.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9. 01.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노인복지과장 지 현)

### 가. 제안이유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수목장의 추모목의 상황에 따라 사용료를 변경하고 오류항목을 수정하여 원활한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 나. 주요내용

- 자연장지 관외자격 오류사항 수정(안 별표 2)
- 무연고단 사용료 수정(안 별표 3)
- 수목장 사용료 개정(안 별표 3)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개정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수목장의 추모목의 상황에 따라 사용료를 변경하고 오류항목을 수정하여 원활한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개정 사항은 자연장지 관외자격 오류사항 정정, 무연고단 사용료 변경, 수목장 사용료 개정임.
-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을 통해, 자연장지 관외자격 및 무연고단 사용료가 명확해짐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선이 감소되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더욱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08. 1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08.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9. 01.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아동보육과장 신용선)

###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제정 근거 법령인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제1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던 근거 규정을 개정 사항에 맞게 반영하여 명시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조항 내 상위법 근거 명시(안 제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제1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던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단가가 현실에 적합한지,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이 아동의 성장에 맞게 균형있게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빈곤으로 인해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08. 1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08.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9. 01.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아동보육과장 신용선)

### 가. 제안이유

- 경기도에서 화성·오산을 통합하여 위탁 지정된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계약기간이 2022. 12. 31. 만료되고, 오산시도 별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할 예정임
- 이에 「2023. 1. 1.부터 향후 5년간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선정」 하고자 하며,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및 원가정보호 서비스를 통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하고자 본 기관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위탁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나. 위탁시설현황

- 설 치 일: 2006. 10. 1.
- 위 치: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 주요시설: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연면적 : 331.75㎡)

○ 건물전경 및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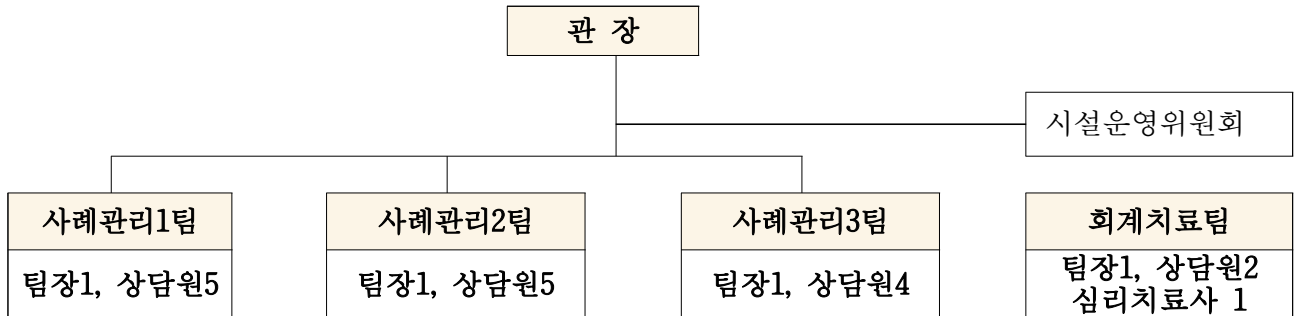


다. 위탁사무

- 아동학대 휴유증 회복: 심리상담, 검사 및 치료
- 원가정보보호서비스: 가족안전계획, 모니터링 체계구축, 분노조절, 양육기술 및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방임가정 및 집중 서비스
- 가족기능 회복: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라. 조직현황

- 조직도



○ 팀별 인력구성

(단위 : 명)

합계	사례관리1팀	사례관리2팀	사례관리3팀	회계치료팀	비고
22	6	6	5	4	1(관장)

○ 직책별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합계	관장	팀장	상담원	심리치료사
22	1	4	16	1

**마. 향후 5년간 민간위탁금 예상액**

(단위 : 천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5,864,671	4,366,397	604,503	893,771
2023년	1,110,340	822,432	116,161	171,747
2024년	1,140,769	847,104	118,484	175,181
2025년	1,172,054	872,517	120,853	178,684
2026년	1,204,219	898,692	123,270	182,257
2027년	1,237,289	925,652	125,735	185,902

**바. 위탁계약기간: 5년(2023. 01. 01. ~ 2027. 12. 31.)**

**사.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아. 분야별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가사	일상생활 훈련, 외식 지원, 위생(이미용 등 지원)
활동 및 이동	등하교 지원, 수화 지원, 외국인통역서비스
생활용품	기타생활용품, 냉난방용품, 아동·유아용품, 청소용품, 출산용품, 가전지원, 의류, 침구 지원 등
일상생활	이동통신요금, 난방비, 생계비, 보험료, 출산비용, TV수신료, 교통비 지원
검진, 진단 및 치료	일반·입원진료, 응급의료서비스
정서발달 및 치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치료, 심리검사
보육 및 교육	학원비, 교육비, 장학금, 교복비 지원
체험 및 여행	야외활동 지원, 체험활동 지원, 여가활동비 지원, 문화활동비 지원
각종 교육	아동권리·학대예방·성폭력·안전교육
아동학대대상자 및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상담 : 아동안전점검 및 행위자 상담</li> <li>- 법적절차 :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조치, 시설보호 절차 지원</li> <li>- 학대피해아동쉼터 입·퇴소 및 절차 지원</li> <li>- 아동 출결 및 비밀전학처리 지원</li> <li>- 부모대상 아동 양육기술 상담 및 교육</li> <li>- 법원 위수탁 업무 지원 :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관련 상담, 교육 이행 및 절차 지원</li> <li>-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및 사건처리 절차 지원</li> <li>- 사례회의 진행 및 참석 : 지역사회 통합사례회의 참석, 외부기관 연계 회의 참석</li> <li>- 시설보호 후 원가정 복귀 아동대상 가족재결합 프로그램</li> </ul>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사회 유관기관(사회복지, 의료, 상담, 교육 등), 기업 및 개인기부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경기도에서 화성·오산을 통합하여 위탁 지정된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계약기간이 2022. 12. 31. 만료되고, 오산시도 별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 이에 2023. 1. 1.부터 향후 5년간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할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최상의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08. 1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08.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9. 01.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문화예술과장 공경진)

### 가. 제안이유

#### ○ 추진근거

-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 추진 필요성

- 노작 홍사용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기획전·프로그램 운영 등 문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절한 운영 관리 주체의 선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 및 위탁)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화성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현황 및 위탁사무 내용

##### ○ 시설현황

- 시 설 명: 노작 홍사용문학관
- 위 치: 화성시 노작로 206
- 시설현황: 건축면적 578.12㎡ (연면적 991.05㎡)
  - 1층: 산유화극장, 작은도서관, 제1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 2층: 제2전시실, 강의실, 지역문학관, 자료실 등



○ 위탁사무 내용

- 문학관 재산의 유지·관리 업무
-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 홍사용 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 문학과 연계된 학습과 실질적인 사회교육의 장 마련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나. 위탁기간: 2년 (2023. 1. 1. ~ 2024. 12. 31.)

다.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로 선정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법인 정관이나 단체 내규에 문학과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 사업내용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 홍사용 선생에 관한 연구 및 사료 수집, 문학관련 프로그램 운영, 전시, 행사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이 적정함

마.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참조
- 소요예산: 769,083천 원(2022년도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2022. 9. ~ 10.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2022. 11. 위수탁협약 체결
  - 2023. 1. ~ 노작 홍사용문학관 운영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동의안은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민간위탁 위·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위탁사무는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홍사용 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임.
-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노작 홍사용문학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2년이라는 위탁기간 등에 대해서는 문학관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기존의 조사·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시대흐름에 맞게 전시를 개편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문학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시 문화의 집(봉담·향남) 민간위탁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08. 1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08.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9. 01. 상정,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문화예술과장 공경진)

### 가. 제안이유

-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 문화 예술의 창달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현황

구분	봉담 문화의 집	향남 문화의 집																					
시설명	화성시 봉담 문화의 집	화성시 향남 문화의 집																					
위치	봉담읍 샘마을1길 7	향남읍 발안로 89																					
건축면적	186.6㎡ (연면적 441.5㎡)	468㎡ (연면적 575㎡)																					
공간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층별</th> <th>면적(㎡)</th> <th>기능</th> </tr> </thead> <tbody> <tr> <td>지하1층</td> <td>58.5</td> <td>강의실(회의실 이용)</td> </tr> <tr> <td>1층</td> <td>186.6</td> <td>문화의 집 사무실, 강의실</td> </tr> <tr> <td>2층</td> <td>196.4</td> <td>강의실-문화관람실, 강의실</td> </tr> </tbody> </table>	층별	면적(㎡)	기능	지하1층	58.5	강의실(회의실 이용)	1층	186.6	문화의 집 사무실, 강의실	2층	196.4	강의실-문화관람실, 강의실	<table border="1"> <thead> <tr> <th>층별</th> <th>면적(㎡)</th> <th>기능</th> </tr> </thead> <tbody> <tr> <td>1층(468㎡)</td> <td>468</td> <td>다목적실, 강의실, 안내데스크 등</td> </tr> <tr> <td>지하(107㎡)</td> <td>107</td> <td>연습실</td> </tr> </tbody> </table>	층별	면적(㎡)	기능	1층(468㎡)	468	다목적실, 강의실, 안내데스크 등	지하(107㎡)	107	연습실
층별	면적(㎡)	기능																					
지하1층	58.5	강의실(회의실 이용)																					
1층	186.6	문화의 집 사무실, 강의실																					
2층	196.4	강의실-문화관람실, 강의실																					
층별	면적(㎡)	기능																					
1층(468㎡)	468	다목적실, 강의실, 안내데스크 등																					
지하(107㎡)	107	연습실																					
인력현황	총 2인 (실장1, 간사1)	총 2인 (실장1, 간사1)																					
위탁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담 문화의 집 및 부대시설물 관리 운영</li> <li>·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시행, 지역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예술의 행사 장소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남 문화의 집 및 부대시설물 관리 운영, 운영계획 수립 시행</li> <li>· 지역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li> <li>·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예술의 행사 장소 제공</li> </ul>																					
주요연혁	1991.05. 신축 준공(복지회관) 2001.09.01. 봉담 문화의 집 개관 2002.01.01. 협성대학교 첫 위탁 운영 2005.01.01.~2020.8.31. 봉담읍주민자치위원회 ※ 수탁단체 해산으로 위수탁협약 해지 2020. 12. 1. ~ (사)화성민예총	1994. 11. 03. 신축 준공 2001. 06. 01. 향남 문화의 집 개관 2002. 01. 01. 화성문화원 첫 위탁운영 2005. 01. 01. 향남읍주민자치위원회 2020. 01. 01. ~ 향남읍주민자치회																					
현수탁자	(사)화성민예총 (2020.12.1.~2022.12.31.)	향남읍주민자치회 (2020.1.1.~2022.12.31.)																					

## 나. 위탁계획

- 위탁기간: 2023. 1. ~ 2024. 12. (2년)
- 신청자격: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소재하고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문화예술의 보급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 수탁자 선정방법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 원칙
  - 수탁기관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
- 위탁사무내용
  - 문화의 집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문화의 집 운영 계획 수립시행
  - 지역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
  -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예술의 행사 장소 제공
  - 기타 시장이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향후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회 동의: 2022년 9월
-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접수: 2022년 10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2022년 11월
- 협약체결 및 2023년 사업계획 수립: 2022년 12월
- 민간위탁 운영: 2023년 1월 ~ 2024년 12월

라. 예산수반사항: 393,825천원(시비100%) 2023년 본예산 편성예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동의안은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위탁사무는 문화의 집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각종 행사 및 전시, 학술·예술의 행사 제공 등임.
- 검토결과, 효율적이고 원만한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탁기관의 신청자격과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상의 수탁기관에 대한 규정이 상이함에 따라, 수탁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수정안 요지 : 화성시 문화의집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신청자격을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소재하고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문화예술의 보급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서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소재하는 주민자치기구, 문화예술 관련 단체, 학술기관”으로 수정

###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수정 대비표

### - 화성시 문화의 집(봉담·향남) 민간위탁 동의안

수 정 전	수 정 후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소재하고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문화예술의 보급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소재하는 주민자치기구, 문화예술 관련 단체, 학술기관